

정밀점검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변경**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점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7.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용역명	용역개요	평가방법	예산규모 (추정금액)		입찰예정	비고
			당초	변경		
삼계교외 10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정밀점검 1식	PQ	143	125	2015. 5월경	
남강대교외 10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정밀점검 1식	PQ	151	133	2015. 5월경	
도평교외 10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정밀점검 1식	PQ	172	150	2015. 5월경	
삼거리교외 10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정밀점검 1식	PQ	148	130	2015. 5월경	
풍정교외 12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정밀점검 1식	PQ	164	144	2015. 5월경	
신안교외 11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정밀점검 1식	PQ	159	139	2015. 5월경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기 간 : 2015. 5. 01(금) ~ 2015. 5. 15(금)

2) 주 소 : <http://pcmo.mltm.go.kr>

☞ 클릭([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 공지사향\)](#))

나. 평가자료 제출일 : 2015. 05. 15(금) 10:00~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다. 평가자료 제출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라. 참가자격

-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참여가 가능(경남도내 업체)하며, 공동참여 업체의 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통지하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76호, 2013.05.02.)에 따릅니다.
- 마.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바. 참여기술자는 입찰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 기술자는 재평가 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자료 제출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표회사 명의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회사 직인 등은 불필요)

아. 평가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자.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